

의안번호	2209956
의 퇴 인	강득구의원
회 답 일	2025.4.28.
추계번호	25D2408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설립 및 등기 등)	시·도의회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음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조(설립 및 등기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시·도의회 산하 지방연구원 설립(안 제4조)

- 현행법¹⁾에 따르면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도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함)²⁾에만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음

1) 현행법 제4조(설립 및 등기 등)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를 말한다)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③④⑤ (생략)

2)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별시(인구 100만 이상) 현황(행정안전부 공고, 2025.1.24.)

특별시: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화성시, 창원시

50만 이상: 성남시, 부천시, 남양주시, 안산시, 평택시, 안양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포항시, 김해시

- 개정안에 따라 시·도의회에도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지방연구원 설립·운영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등이 발생할 수 있음³⁾
 -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다르므로 개정안에 따라 연구를 설립할 시·도의회와 지방연구원 출연금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 [참고자료] 지방연구원 현황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임홍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홍연	02-6788-4673	limhy@nabo.go.kr

3) 제13조(운영재원)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참고자료] 지방연구원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지자체	연구원명	설립	인력				예산('24년, 일반+특별회계+기금 등)		
			전체		연구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총액	출연금	자체수입 등
계			1,900	1,588	1,092	868	331,872	196,804	135,068
서울	서울연구원	1992	301	308	213	220	52,202	39,930	12,272
부산	부산연구원	1992	109	102	50	48	13,965	11,500	2,465
대구	대구정책연구원	2023	50	36	40	27	7,300	3,900	3,400
인천	인천연구원	1995	106	98	49	47	17,779	12,067	5,712
광주	광주연구원	2023	51	38	30	15	3,158	2,365	793
대전/세종	대전세종연구원	2001 (2016)	72	68	40	40	14,858	10,541	4,317
울산	울산연구원	2000	69	66	34	33	15,138	5,935	9,203
경기	경기연구원	1994	187	161	68	54	29,461	19,644	9,817
강원	강원연구원	1994	66	56	39	35	9,941	6,145	3,796
충북	충북연구원	1990	46	36	33	25	12,826	4,567	8,259
충남	충남연구원	1995	155	111	91	61	46,844	25,323	21,521
전북	전북연구원	2005	83	67	59	50	12,184	6,740	5,444
전남	전남연구원	2015	76	38	42	20	9,195	5,500	3,695
경북	경북연구원	1991	85	51	61	36	8,853	6,150	2,703
	경북여성정책개발원	1997	28	27	11	11	7,299	2,820	4,479
경남	경남연구원	1992	115	135	42	34	19,967	3,505	16,462
제주	제주연구원	1997	46	42	28	26	17,268	4,299	12,969
수원	수원시정연구원	2013	40	32	27	20	7,592	4,513	3,079
창원	창원시정연구원	2015	40	28	21	16	5,410	3,345	2,065
고양	고양시정연구원	2017	30	18	19	11	4,006	3,247	759
용인	용인시정연구원	2018	30	21	20	13	3,600	3,270	330
전주	전주시정연구원	2023	20	6	15	2	2,281	1,859	422
성남	성남시정연구원	2023	24	19	12	10	5,198	4,092	1,106
화성	화성시연구원	2023	31	20	21	14	3,667	3,667	—
청주	청주시정연구원	2024	15	4	9	0	1,780	1,780	—
시흥	시흥시정연구원	2024	25	—	18	—	100	100	—
김해	김해연구원*	2024							
안산	안산미래연구원**	2025							

* 김해연구원 설립허가('24.3.), 개원('24.7.) / ** 안산미래연구원 설립허가('24.9.), 개원('25.4.)

자료: 행정안전부